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

충청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03
----------	-----

2018. 12. 14.(금)
건설환경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연종석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18년 11월 21일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11월 22일

라. 상정일자 : 2018년 12월 5일

(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연종석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상위법령인 「인공조명에
의한 빛공해 방지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
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빛공해 방지조례의 목적, 조명기구 정의 및 범위를 정함(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)
- 빛공해 관리 중요사항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,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)
- 빛방사 허용기준의 강화 필요지역과 선정 절차, 조명기구 설치 지도 권고와 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시 승인절차를 정함(안 제7조에서 제9조 까지)
-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심의사항을 정함(안 제10조)
- 빛공해 방지 시책 추진 관련 행·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1조)
- 빛공해 방지 우수자, 조명기구 선정 시상 (안 제12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환경소방수석전문위원 김병준)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-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*)는 수면방해, 눈부심, 생활불편을

*) 「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"(이하 "빛공해"라 한다)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. 2. "조명기구"란 공간을 밝게 하거나 광고, 장식 등을 위하여 설치된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초래하고 도심뿐만이 아닌 농촌지역의 농작물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빛공해로부터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음.
- 안 제3조는 조명기구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음.
-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빛공해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안 제7조는 천문관측 시설의 주변지역과 철새도래지 등에 빛방사허용 기준을 강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, 이 경우 적용절차와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안 제8조 및 제9조는 빛방사허용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지도 및 권고에 관한 사항과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 조명기구를 정비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- 안 제12조는 빛공해 방지에 기여하는 바가 큰 사람 또는 우수조명기구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- 기타 조항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, 입법예고('18. 11. 15.~'18. 11. 20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라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로부터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없 음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없 음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」

충청북도 조례 제호

충청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공간조명”이란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특정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.
2. “광고조명”이란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.
3. “장식조명”이란 건축물(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. 이하 같다), 시설물,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.

제3조(조명기구의 범위)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명기구에 대해 적용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비추는 공간조명

가. 「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

제2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간

나. 옥외 체육공간

2.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조명
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장식하기 위한 장식조명

가. 영 제2조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건축물 및 시설물

나.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

다. 「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」 제12조제4항에 따른 미술작품

제4조(빛공해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도지사는 「인공조명에 의한 빛

공해 방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제1항에 따라 빛공해관리에 관한

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빛공해방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

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빛공해 업무담당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이 경우 위촉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.

1. 충청북도의회 의원

2. 도 소속 관계공무원

3. 인공조명 등 빛공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

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⑥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.

⑦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빛공해 소관 업무 부서장이 된다.

제5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법 제5조에 따른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2. 법 제9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법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·변경
3.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
4. 영 제5조에 따른 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5. 「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」(이하“규칙”이라 한다) 제6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에 관한 사항
6. 규칙 제10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
7. 빛공해방지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치법규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
8. 빛공해 방지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
9. 그 밖에 도지사가 빛공해방지대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7조(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)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1. 천문관측 시설의 주변 지역

2. 철새 도래지

3.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4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 및 장소

4. 그 밖에 생태계보호를 위해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려면 해당 시장·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화대상 조명환경관리구역 현황과 강화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.

제8조(지도 및 권고) 도지사는 옥외공간에 조명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규칙 제6조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지도 및 권고를 할 수 있다.

제9조(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) 도지사는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제10조(빛공해환경영향평가)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 평가 업무의 일부를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·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1. 규칙 제10조에 따른 평가 항목·범위 등의 세부사항
2.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11조(지원제도)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 조명기구를 정비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조명환경 관리지역 중 자연

환경과 주거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명기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6조의 빛방사허용기준 등을 반영한 조명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도지사는 빛공해 개선을 위하여 토지·건축물 소유자 등과 조명개선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2조(우수 조명에 대한 선정 등) 도지사는 빛공해 방지에 기여하는 바가 큰 사람 또는 우수 조명기구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[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]

제5조(시·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빛공해방지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(이하 "시·도빛공해방지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7조(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) ① 시·도지사는 시·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·시행과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·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(이하 "지역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제9조(조명환경관리구역) ① 시·도지사는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: 과도한 인공조명이 자연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
2.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: 과도한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 및 동물·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
3.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: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

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

4.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: 상업활동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

② 시·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용도지역, 토지이용현황,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③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지역주민과 환경에 대한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)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
④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자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해당 지역의 명칭·위치 및 면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.

⑤ 시·도지사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시·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⑦ 환경부장관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의 환경친화적인 관리·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지역에 대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⑧ 제1항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(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) ① 시·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거나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의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제11조(빛방사허용기준)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허용되는 빛방사 허용기준(이하 "빛방사허용기준"이라 한다)을 에너지 절약과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6.1.27>

②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으로는 빛공해의 방지 또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 보다 엄격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<신설 2016.1.27.>

제12조(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등)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있는 조명기구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

이 있는 자(이하 "소유자등"이라 한다)는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. 다만, 국내외 행사, 축제 또는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6. 1. 2 7.>

제16조(빛공해환경영향평가) 시·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의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[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]

제5조(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수립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(이하 "빛환경 관리계획"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 관리 목표 및 기본방향
2. 조명환경관리구역의 현황 및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(이하 "빛공해"라 한다) 실태
3.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조명기구에 대한 친환경적 관리방안
4.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 방안

5. 그 밖에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

② 시·도지사는 빛환경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7조에 따른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
③ 시·도지사는 빛환경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환경부장관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

제6조(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)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 서류를 조명기구 설치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시·도지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[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]

제6조(빛방사허용기준) ① 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.

② 삭제 <2016.7.27.>

③ 시·도지사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엄격한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6.7.27.>

제10조(빛공해환경영향평가) ① 법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환경 현황

가. 자연 및 생활 환경 현황

나. 토지이용 현황 및 지역개발 계획

다. 조명기구 설치·관리 및 빛공해 현황

2.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빛공해 영향분석

가. 인공조명이 동물·식물, 경관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

나. 인공조명이 주민의 주거, 안전, 건강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

다.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에 미치는 영향

라. 인공조명이 천체관측에 미치는 영향

3. 그 밖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

② 시·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빛공해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절차 등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[별표]

빛방사허용기준(제6조제1항 관련)

1. 영 제2조제1호의 조명기구

구분 측정기준	적용시간	기준값	조명환경관리구역				단위
			제1종	제2종	제3종	제4종	
주거지 연직면 조도	해진 후 60분 ~ 해뜨기 전 60분	최대값		10 이하		25 이하	lx (lm/m ²)

2. 영 제2조제2호의 조명기구

가.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

구분 측정기준	적용시간	기준값	조명환경관리구역				단위
			제1종	제2종	제3종	제4종	
주거지 연직면 조도	해진 후 60분 ~ 해뜨기 전 60분	최대값		10 이하		25 이하	lx (lm/m ²)
발광표면 회도	해진 후 60분 ~ 24:00	평균값	400 이하	800 이하	1000 이하	1500 이하	cd/m ²
	24:00 ~ 해뜨기 전 60분		50 이하	400 이하	800 이하	1000 이하	

나. 그 밖의 조명기구

구분 측정기준	적용시간	기준값	조명환경관리구역				단위
			제1종	제2종	제3종	제4종	
발광표면 회도	해진 후 60분 ~ 해뜨기 전 60분	최대값	50 이하	400 이하	800 이하	1000 이하	cd/m ²

3. 영 제2조제3호의 조명기구

구분 측정기준	적용시간	기준값	조명환경관리구역				단위
			제1종	제2종	제3종	제4종	
발광표면 회도	해진 후 60분 ~ 해뜨기 전 60분	평균값		5 이하	15 이하	25 이하	cd/m ²
			20 이하	60 이하	180 이하	300 이하	

비고

- 가. 조도 및 휘도의 뜻은 한국산업표준 KS A 3012(광학용어)에 따른다.
- 나. "주거지 연직면 조도"란 해당 조명기구로부터 방사되는 빛이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4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창면을 비출 때 그 창면에서의 연직면(鉛直面) 조도를 말한다. 이 경우 측정 대상 창면이 해당 조명기구가 설치된 조명환경관리구역 바깥에 위치할 때에는 조명기구가 설치된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한다.
- 다. "전광류 광고물"이란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조명기구 중 발광(發光) 다이오드, 액정표시장치 등 전자식 발광기구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하는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조명기구를 말한다.
- 라.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의 주거지 연직면 조도는 연출주기, 휘도 변화정도 등을 고려하여 2회 이상 측정한 연직면 조도 중 최대값을 기준으로 한다.
- 마. "발광표면"은 조명기구 및 그 조명기구가 광고 또는 장식을 목적으로 비추는 사물의 바깥면을 말한다. 이 경우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조명의 경우에는 연출주기 동안 발광하는 모든 부위를 포함한다.
- 바. 빛공해의 측정 및 평가 기준은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사.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에 의해 설치되는 조명기구에 대해서는 설치지역에 관계없이 제4종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한다.

충청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비용추계서

I 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가. 제정안에 따라 도지사는 빛공해 관리에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을 규정함(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).
- 나. 또한,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위해 기관 또는 단체에게 대행(안 제10조)하고, 빛공해 방지를 위한 조명기구 정비 지원 및 재정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(안 제11조).

2. 비용추계의 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1) 추계시점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추계를 실시함.
- 2) 빛공해 환경영향 평가는 3년마다 실시함.

나. 추계의 결과

-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19년도에는 2,000천원이 소요되고, 향후 5년간 도 소요예산 460,000천원이 추계됨.

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시행시 소요예산

(단위: 천원)

구 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합계
위원회 참석수당 (안 제4조)	2,000	2,000	2,000	2,000	2,000	10,000
빛공해환경영향평가 (도비50%) (안 제10조)	-	-	50,000	-	-	50,000
조명정비사업 지원 (안 제11조)	-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400,000
합 계	2,000	102,000	152,000	102,000	102,000	460,000

※ 「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」 제16조에 따라 빛공해 환경영향 평가는 3년마다 1회 실시

※ 재원부담비율 : 빛공해환경영향평가(국비 50, 도비 50),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- 빛공해 관리에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빛공해방지위원회를 9명 이내의 위원으로(위촉직 위원을 2분의 1이상) 구성하여 수당과 여비 지급에 대한 비용추계 검토가 필요함.

※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외부위원에 한하여 참석수당으로 2시간 이상 100천원 추계('18년도 충청북도 예산편성 기준경비)

- 빛공해방지위원회 연2회의 정기회와 연1회의 임시회 소집시
 - : 100천원 × 5명(민간위원) × 연4회 회의 = 2,000천원

- 빛 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 평가를 위해 빛 공해 환경영향 평가 연구용역 실시에 대한 비용추계 검토가 필요함.

※ 2018년 충청북도 빛공해 환경영향 평가 연구용역비 100,000천원(국비 50%, 도비 50%) 예산 기준 적용하여 충청북도(11개 시·군) 환경영향

평가 연구 용역비 50,000천원 추계

(빛공해 환경영향 평가 연구 용역비, 국비 50%, 도비 50%)

- 빛공해 방지를 위한 조명기구 개선사업을 발굴하고, 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의 비용추계 검토가 필요함.

※ 가로등(LED) 교체 등 좋은 빛 환경 조성 추진 관련 사업비 지원(도비 50%)

- 4개 사업 × 25,000천원 = 100,000천원

- 종합적으로, 동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위원회 참석수당은 10,000천원, 환경영향평가는 50,000천원, 조명개선사업 발굴·추진은 4,000,000천원으로 총 소요예산 46,000천원이 추계됨.